서화성농협 매송영농지원센터 토목공사

공 사 입 찰 현 장 설 명 서

2026. 07.

서화성농업협동조합

- 목 차 -

Ⅰ. 공사개요 ---------- 2

Ⅱ. 특기사항 ---------- 13

Ⅰ. 공사개요

1. 공사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서화성농협 매송영농지원센터 도로점용부지 토목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883-1외 4필지	
도로종류	도시계획도로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가축사육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도로구역, 성장관리권역	
공사면적	542㎡	
용 도	농기계 수리 대기장소	

2. 면적개요

가. 구적조서 (단위:㎡)

위치	지번	지목	지적	점용신청면적	제외지	비고
매송면 야목리	883-1	답	895	53	842	
	883-2		76	29	47	
	884-1		1,222	373	849	
	884-2		30	30	-	
	885		1,276	57	1,219	
면적 합계			3,499	**542**	2,957	

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약 0.5개월 전후 (낙찰 후 계약상대자와 별도 협의 후 결정)

4. 대관업무

1) 당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대관협의, 인·허가 관련 업무 일체(비용 포함)를 포함한다.
2) 건축 허가 업무 등 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인계받아,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변경절차 이행 등 모든 대관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3) 본회 요청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내용을 조정 내지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설계도서 작성이나 관련 대관 인허가 변경 업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적극 수행하여야 한다.

가. 도로점용허가 관련

○ 허가번호 제2026-138호

나. 기타 관련 대관 업무

1) 비산먼지 발생 및 특정 공사 사전 신고
2) 가설건축물(현장 사무실 등) 축조 및 철거신고

○ 협력업체 사무실, 각종 창고 등의 수량을 사전에 예측 후 신고하여야 하며, 수량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외부 기반시설 연결을 위한 공사 시 도로점용, 굴착 허가(신고) 및 원상복구 등 관련 비용 일체

※ 점용 및 굴착부위를 검토 후 해당구간에 옥외 지장물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장물의 관리청과 협의 후 착수하여야 한다.

3) 폐기물 배출자 신고 관련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예상)하는 경우,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등에 따라 적정 처리하고 그 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위탁처리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유자격자(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조사, 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등 관련업무 일체를 계약상대자 책임으로 하여야 한다.

○ 「자원순환기본법」에 의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 매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부과되므로 계약상대자는 법 취지부합 및 부담금 최소화를 위하여 분리배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처리 및 운반 등 관련비용은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 기타 착공 및 준공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일체 하여야 한다.(안전관리예치금 등 각종 비용 납부 포함)

○ 공사 중 사업부서 요청에 의해, 허가변경사항(경미한 변경업무 포함)이 발생할 경우, 건축허가(변경) 등 관련 인허가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범위 : 당해 토목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공사

○ 세부내용은 설계서(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참조

(현장설명 이후 설계서 별도 제공 예정 / 제본 제외)

○ 현장설명서 및 설계서상 반영된 시설 외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시행을 위해 추가 또는 보완 설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계획서를 제출, 공사감독자의 검토·승인을 득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설치/사용/관리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건축허가)의 준수사항(사업이행조건 등) 등을 사전 확인 후 필요사항 이행 또는 적정 조치 등을 책임시행 하여, 본 공사진행 및 대관준공일정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관련비용 포함)

○ 세부 시설 용도 및 실배치 계획 등에 대하여 본회에서 조정 내지 변경 시공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내용을 조정 또는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실계도서 작성이나 관련 대관 인허가 변경업무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관련비용 포함)

가. 건축, 토목 및 조경공사

○ 당해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토목공사(교통시설물 공사 포함)

○ 건물 내・외부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시설

○ 공사 부지 내,외부 철거 및 원상복구 등 기반시설 연결공사(우수, 오수, 상수, 도시가스 등)의 착수 전 대관 및 관리청 업무협의 관련 업무 일체

※ 기반시설 연결공사 부위를 제3자가 점용하고 있을 경우, 사전에 인허가 기관과 협의 후 기반시설 연결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도로에 접한 차량 출입구 및 부지 외 공사 사항에 대한 도로점용 및 원상복구와 이에 따른 대관 업무 일체

○ 서화성농협 매송영농지원센터 토목공사 예정부지 내외 철거 및 관련 폐기물 처리비용 포함
- 세륜기 기초, 도보 및 도로포장 철거 등

○ 토공사, 우・오수공사, 상수공사, 포장공사, 부대시설 공사 등 토목공사 일체

○ 공사 중에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 및 관련비용 일체

6. 토목공사

가. 세부공종별 공사내용 : 세부사항 설계도면 및 시방서 참조

공사구분	품 목	규 격	비 고
토공사	부지조성 성토	토사 및 골재	**기존 매송영농지원센터 건축부지 레벨(높이)과 동일한 레벨로 성토**
	토목 지중배관 터파기 및 되메우기		비다짐, 노상(95%이상 다짐), 노체(90%이상 다짐)
	토목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반입토	토사	
우수공사			
	우수관로	ø1000	흄관
	집수정	1200x1200	
	집수정 내 스틸그레이팅	-	중하중 스틸그레이팅

포장공사	아스콘포장	T=50	
	콘크리트 포장	T=150	
	도로경계석	150x150x1000	화강석
	주차차선도색	융착식 도료	백색, 청색
	카스토퍼	150x120x750	
구조물공사	식생블럭 쌓기	H=0.5~4.0	
	휀스설치	50m	백색 1.2m
철거공사	옹벽 상단 철거	T=300~500mm	

나. 도로공사 착수 전 화성시청 관할부서 등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도서와는 무관하게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에게 보고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공사와 관련된 모든 기반시설 연결공사는 지장물 조사를 선행하여야 하고, 지장물 별 관리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굴착하여야 하며, 공사시행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부지 내 지중관로를 시 기반시설(우수, 오수, 상수, 가스 등)과 연결시 인근 주택, 상가 등과 원활히 협의하여 철거, 관로터파기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 관할관청 및 관리기관과 사전 협의 후 터파기 구간, 시점 등을 협의하여 업무진행 하여야 한다. (관련비용 포함)

1) 포장공사

○ 아스팔트콘크리트, 경계석 등

- 대지경계부 포장은 주변 동일포장구간과 연계될 수 있도록 시공 할 것.

※ 옹벽철거부분과 신규 토목공사부분은 단차가 없어야 하며 옹벽철거 후 상단부분에 50T이상의 아스콘 포장을 실시할 것

- 시공 전 색상 및 패턴 등의 시공 상세도를 제출 후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할 것.

7. 별도공사

○ 별도공사 없음

8. 지급자재

○ 지급자재 없음

10. 매송영농지원센터 토목공사 세부 공사내역

○ 성토물량(토사/골재) 및 콘크리트 아스콘 물량 계산
도면 상 물량은 약식으로 계산된 물량으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공사에 투입되는 물량은 입찰자가 계산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계산오류로 인한 물량 부족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 지반층 내역

- 기존 부지는 연약지반이 아래있어 지반침하에 따른 부지가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반공사 및 다짐이 필요함.

지층 단면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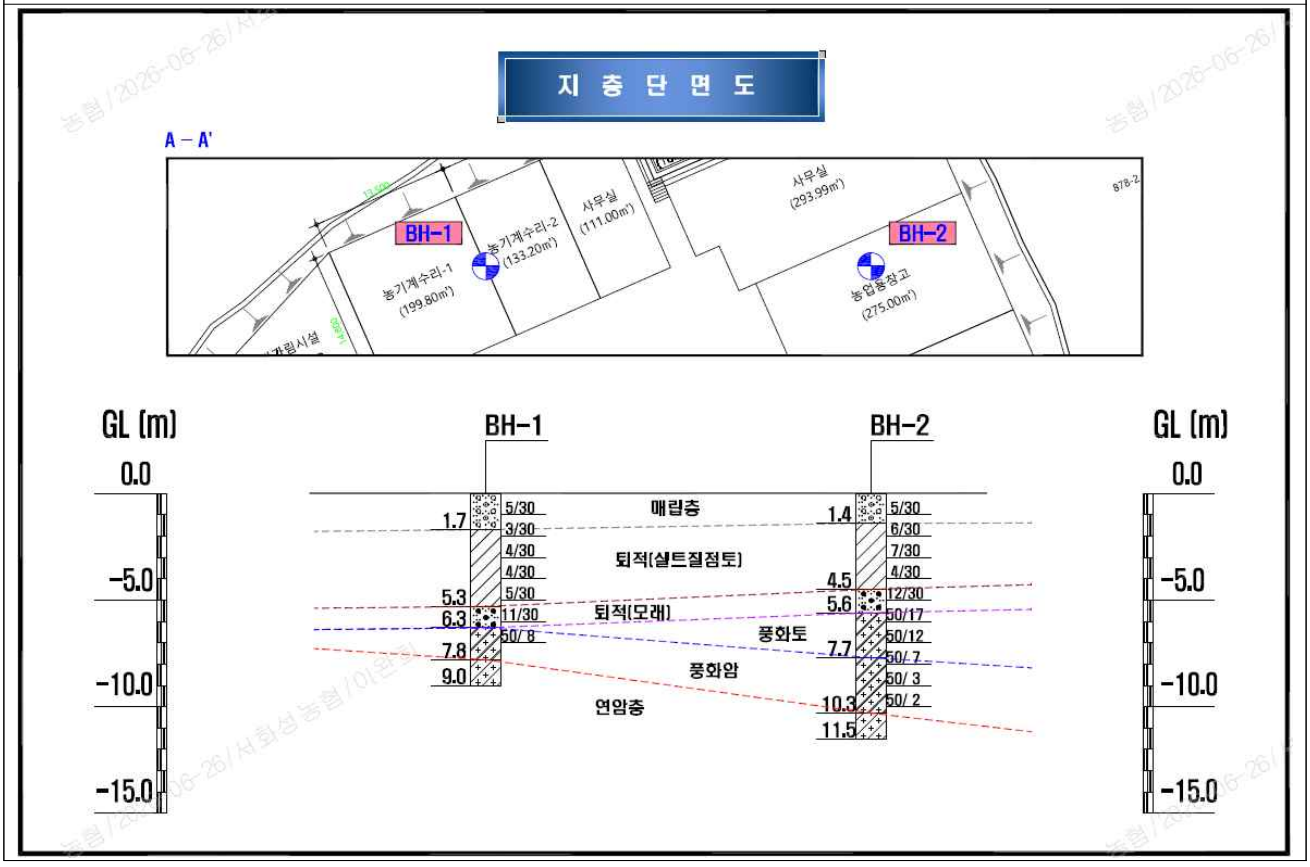

- 현재 토목공사부지는 BH-1에 가까운 지질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퇴적(실드질점토) 구간을 확인하여 관련 토목 다짐공사 내역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 **기존시설(옹벽 및 휀스) 철거**

- **옹벽 상단부분 30~50cm부분을 철거하여 기존 매송영농지원센터 부지와 단차없이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구성합니다.**

현황사진	옹벽 철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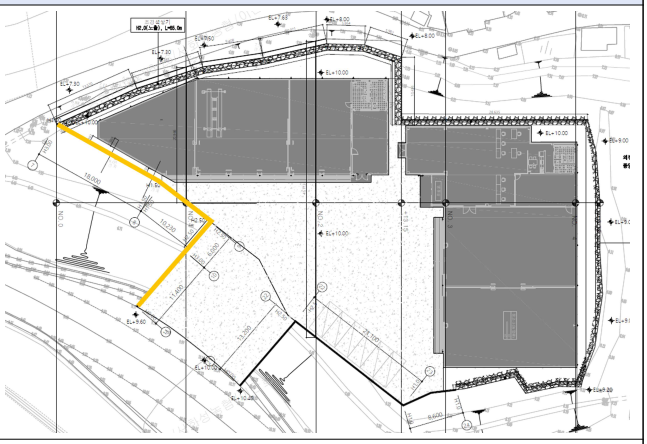
	○ 옹벽 높이는 기존 부지에서 30cm~50cm 사이로 철거가 필요하며 내부에 철근이 배근되어 있어 철거 및 절단이 필요함

현황사진	휀스 철거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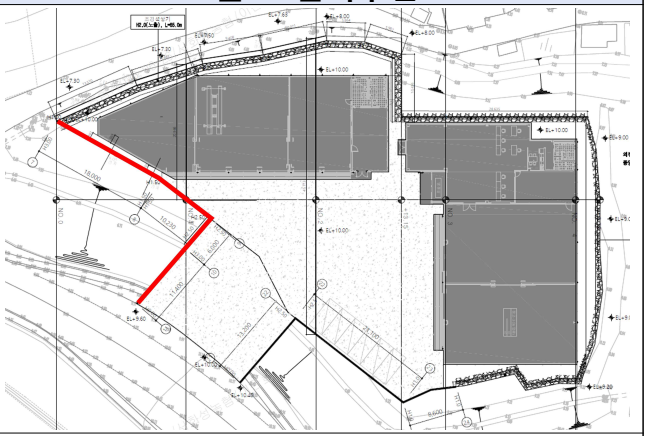

○ 휀스 높이는 900mm(출입구 전면) ~1200mm(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지연결을 위하여 철거가 필요함

○ 철거 후 재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상태를 보이고 있어 자재 재사용 여부를 내역서상 표기가 필요함

○ 기존 우수관로 철거 및 지반철거

현황사진	
	
○ 기존 관로는 철거(구거) 및 이동설치(관로-후면이동설치)가 필요함	

○ 부지성토 및 포장

현황	포장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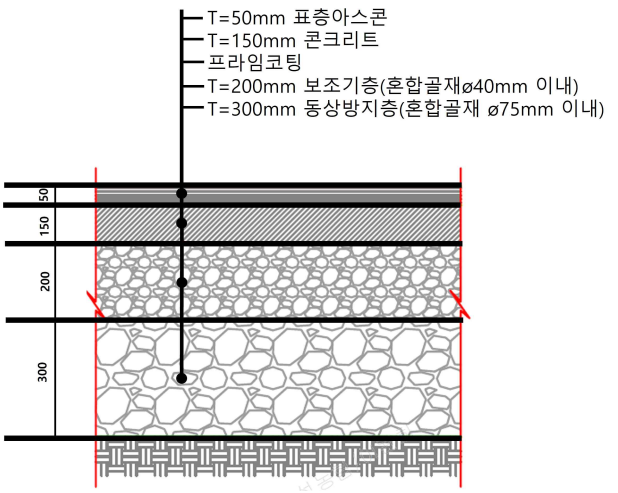

○ 점용부지토목공사 성토 필요 (기존 약 7.6레벨 성토 후 약 10레벨)
○ 동상방지층 300mm / 보조기층 200mm / 콘크리트 포장 150mm / 아스콘 50mm
※ 콘크리트 포장 전 방습을 예방하는 방수비닐을 설치
○ 옹벽 철거 후 상단은 아스콘 포장(50mm)으로 하여 부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공사실시

○ 휀스설치

휀스 설치 상세도	휀스 설치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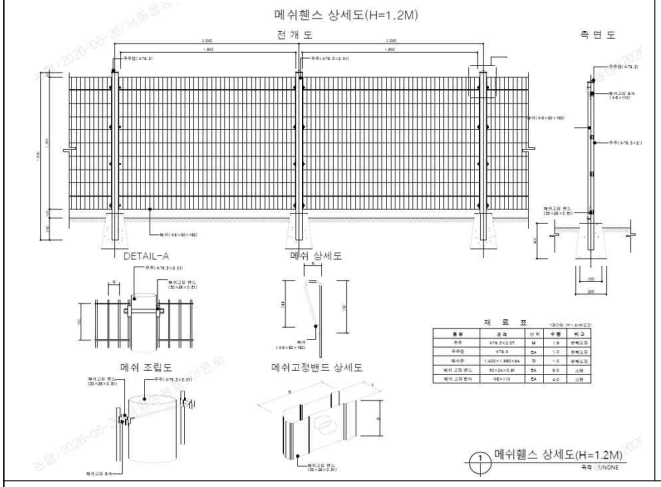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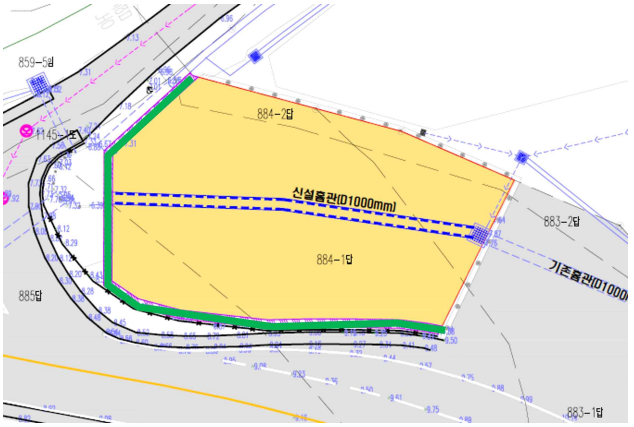

○ 식생블럭 상단 콘크리트 타설 후 휀스(약 50m) 설치
○ 메쉬휀스 지주대 및 부자재 포함

○ 주차라인 표시

주차라인 설치상세도	주차라인 설치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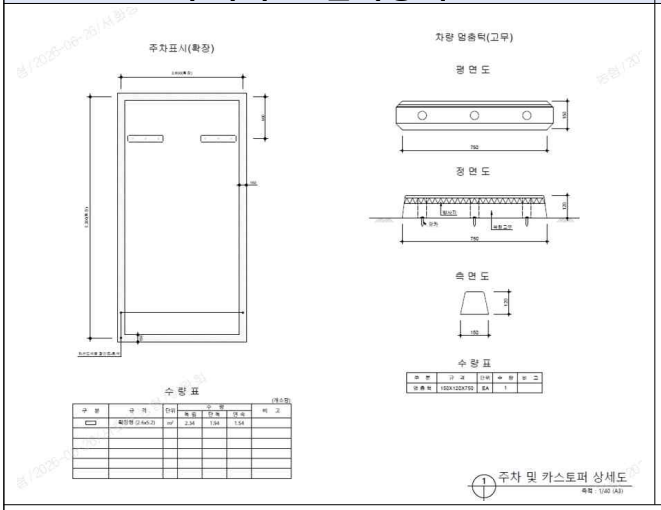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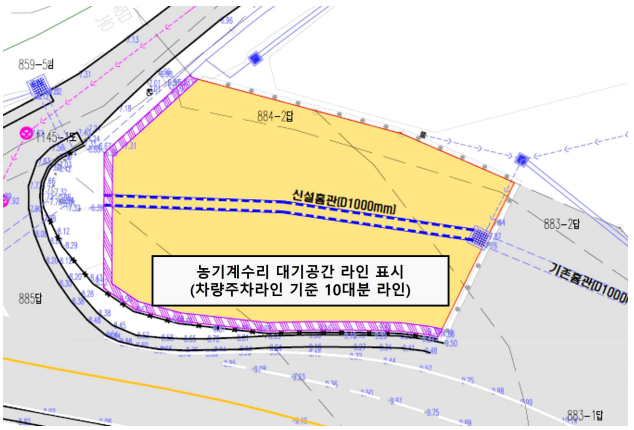

○ 주차라인은 농기계 크기 및 특성에 맞도록 변경 가능
○ 차량기준 10대 분량의 주차라인 도색 및 차량멈춤턱(매송영농지원센터와 같은 형태)의 수량 필요

○ 우수관로 및 집수정 설치

우수관로 및 집수정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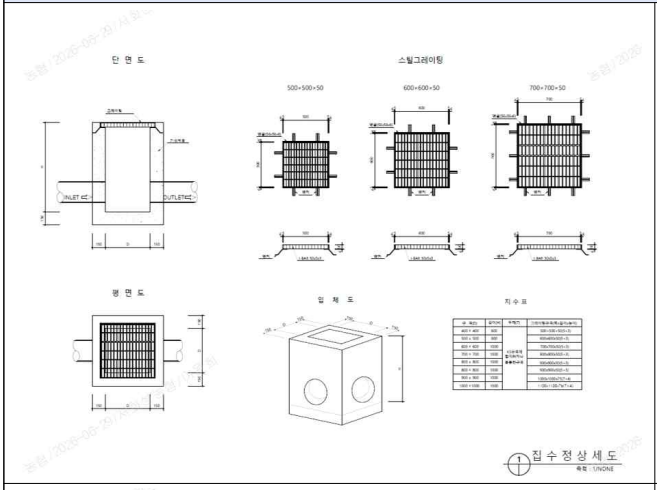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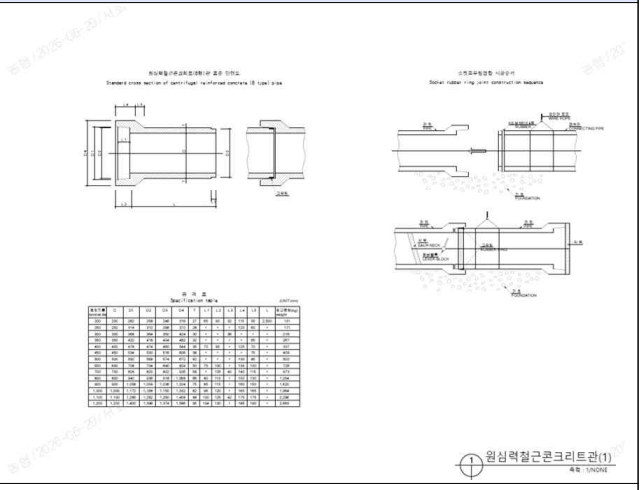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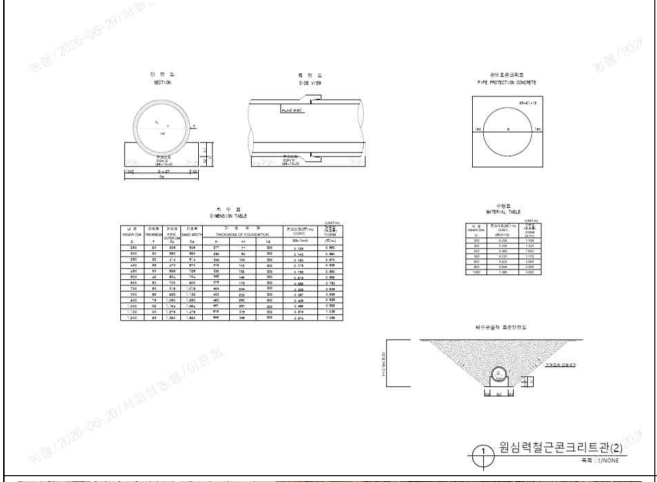	○ 우수관로(흄관 ø1000, 31m) 설치 ○ 집수정 1.2m*1.2m 설치
	○ 기존 시설 철거 후(날개벽 등) 집수정 설치

9. 기타사항

○ 건축공사 시공사는 건설공사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건설공사보험은 건축공사 의무가입 대상으로 서화성농협에서 가입하여야 한다.

○ 계약이행보증증권 및 하자보증증권은 필수로 발급하며 관련요율 및 기간은 [서화성농협 매송영농지원센터 토목공사 입찰설명서] 내용에 따른다.

10. 도면내역 (※ 상세내역 설계도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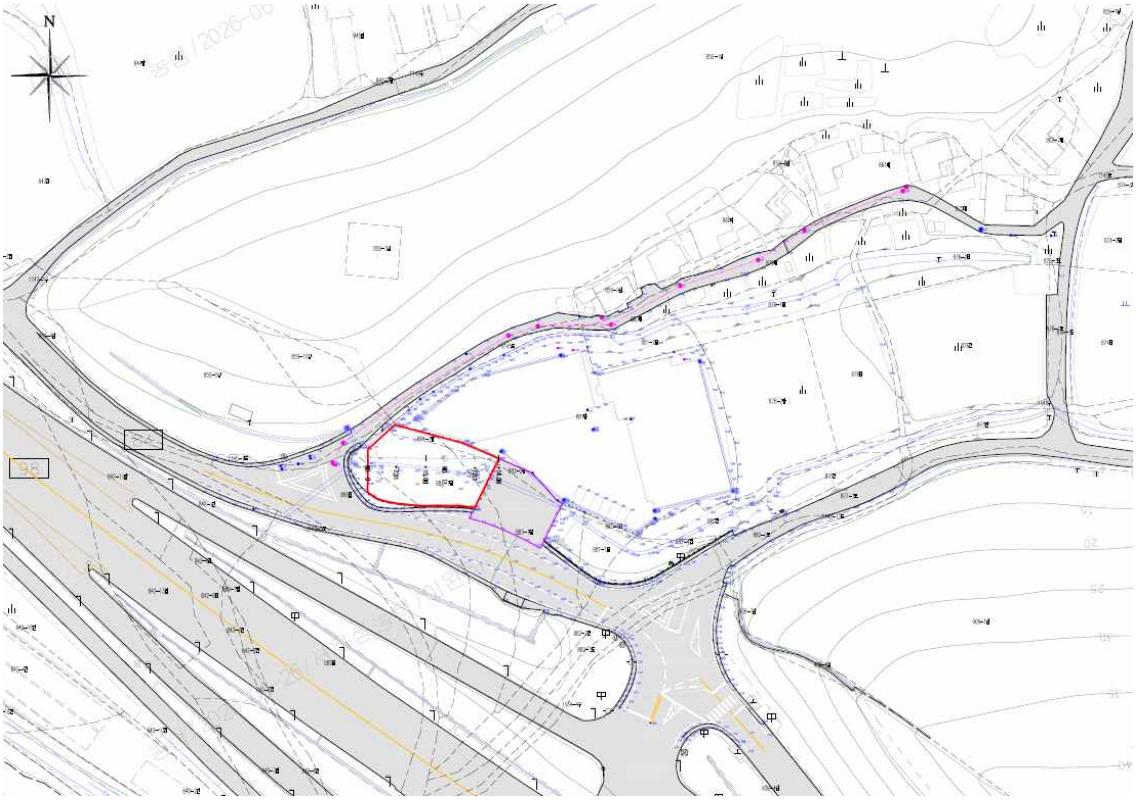

[현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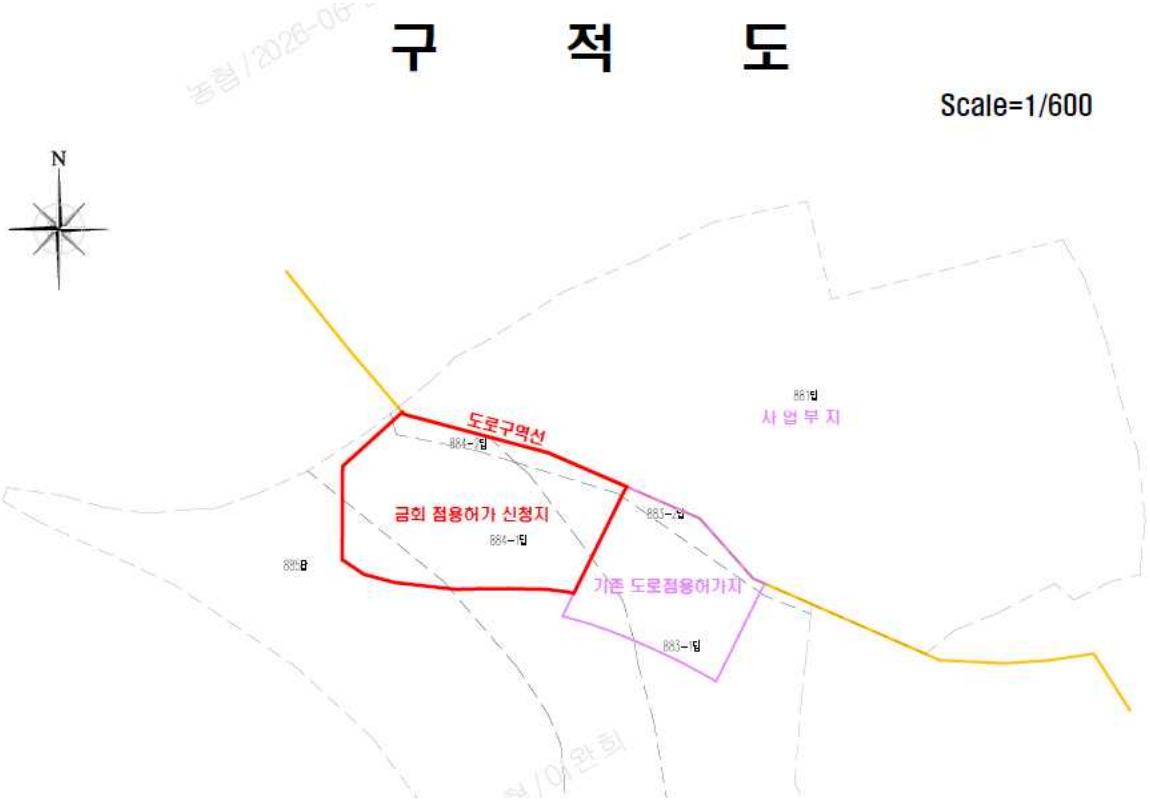

[구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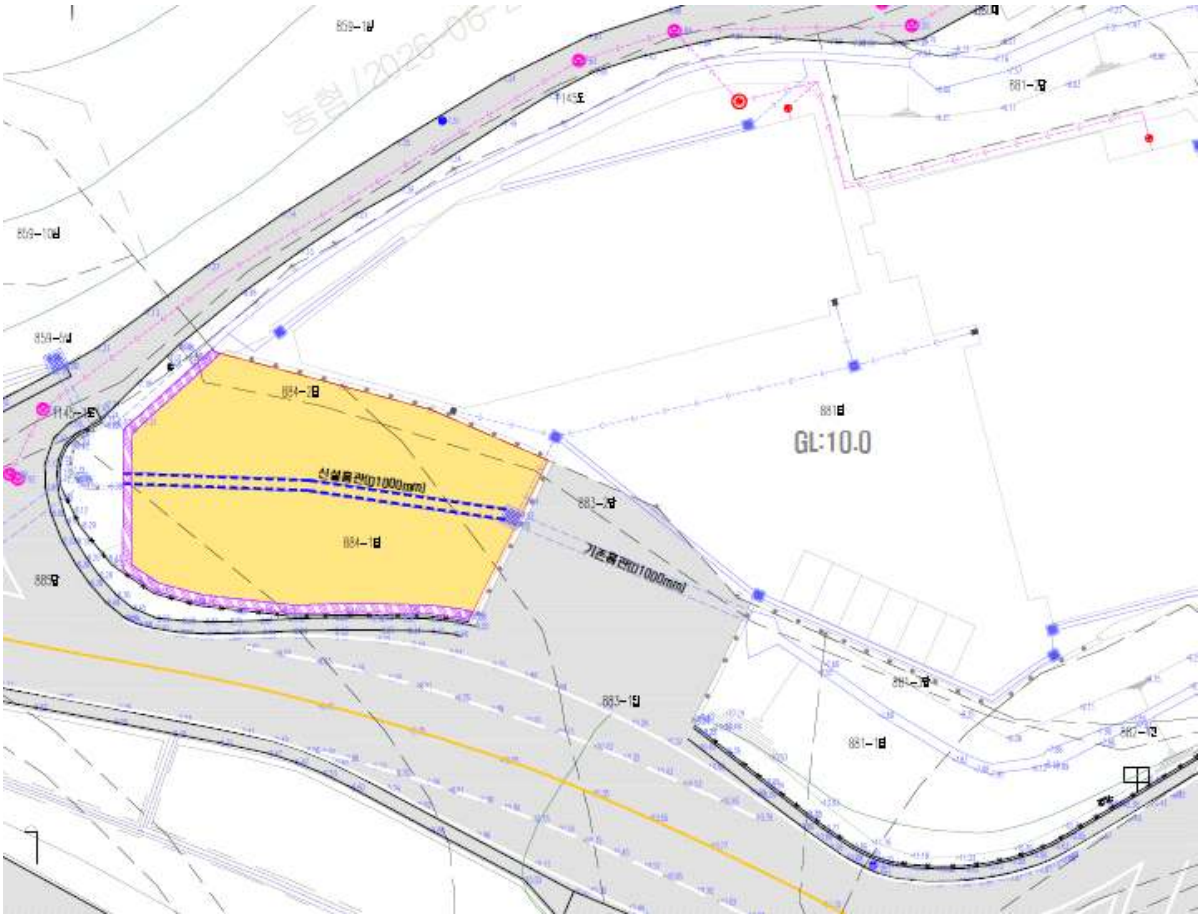

[공사계획 평면도]

Ⅱ. 특기사항

1. 본 공사장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2항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상주시켜 현장 내 제반공사의 안전사고에 책임을 지고 공사기간 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 공사비 내에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는 각종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명 및 기존건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기성검사와 준공검사 신청 시에는 산재, 고용, 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사용증빙자료를 제출하고 납부차액은 정산한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1) 예정가격 작성 시 아래와 같이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으로 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계약내역서 작성 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

2) 대가 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계상된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 한다.

3) 기타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의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계상된 금액에 대하여 납부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사후정산 한다. 계약상대자의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증액 정산 할 수 없다.

□ 공사비 원가계산서 계상금액 [단위 : 원]

구 분	건강 보험료	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 관리비	환경 보전비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
토목공사	-	-	-	2,848,015	271,334	95,319

※ 정산 등 관련내용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참조

[증빙자료 인정범위]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가입증명서 및 완납확인서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관할 납부기관에 사업자명을 기설신고하고 납부한 납입증명서 ※ 당해사업장(서화성농협 매송영농지원센터 신축공사) 명의로 신고납부한 납입증명서	-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납부금액 중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함. - 현장대리인, 현장기사, 청수원 등에 대한 납부금은 제외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사용된 내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사용내역서 -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원본대조필 사본)첨부, 원본제시 - 공사관계자·노무자 등에게 지급된 물품·입금 등의 지급근거(대장 등) 첨부 - 사진, 검수·확인자료 등 증빙자료 등 첨부 - 기타 감리원이나 공사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노무자에게 물품 지급근거, 사진, 감리원 확인 자료 등 증빙자료 포함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납입영수증	

※ 보험료 정산 관련법령 및 본회규정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의2 (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보험료 등의 비용(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도급금액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27., 2013. 3. 23., 2014. 2. 5.>
②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③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0. 5. 27.,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8.]

<본회규정>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11.3.14.(월)>
제33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①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를 관련 법령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또는 기 공지된 금액을 계상하여 처리)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공사비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시 당해 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제2항 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정산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1) 계약담당자 : 서화성농업협동조합장 또는 서화성농업협동조합장으로부터 공사계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함.
2) 계약상대자 : 발주사무소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함.
3) 공사감독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3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화성농협이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4) 설계서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함.

3.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다르거나, 관련공사에 적합하지 않거나 기타오류, 누락 등 모순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로 판정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1) 공사도급계약서
2) 현장설명서
3) 특기시방서
4) 설 계 도
5) 일반시방서
6)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4. 공사비내역서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시 착공관련 서류와 같이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농협 작성 기준 준용)
2) 공사비 내역서 작성 시 법정기준 및 요율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산재, 고용, 건강, 노인장기, 연금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 건강, 노인장기, 연금보험료 반영
3) 공사감독자가 공사비내역서의 내용에 허위 또는 착오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급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공사감독자로부터 요구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본 공사는 설계서(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한)에 의한 총액 입찰로서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를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상의 품목 또는 물량 누락을 이유로 추가지급 또는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로 발생하는 설계변경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6. 공사 시공상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처리한다. 또한, 경미한 설게변경이라도 필히 변경사유, 변경전후도면, 공사비 개략증감내역을 첨부하여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득하도록 하고 기타 시공 중 의문사항은 감독 및 감리자와 협의 후 시공하며 수급자의 단독 행위는 금한다

- 설계변경내역 중 설계시 반영한 내역보다 금액 또는 성능이 낮게 적용되는 경우는 신규 비목으로 분류하지 않으며, 설계변경 또는 준공 정산시 감액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본 공사 현장에는 설계도서,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현장일지, 공정표 등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정보고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단, 다음과 같이 공정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1) 전체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창고 및 작업장 기타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 – 낙찰 후 즉시 제출
2) 주요 공종별 시공계획서 – 낙찰 후 즉시 제출
3) 월간공정표 – 매월말에 익월분 제출
4) 주간공정표 – 매주말에 익주분 제출
5) 작업일지 – 매일 작성하여 제출
6) 월간공정보고서 – 매월 2부 제본 후 제출

8.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외주제작물은 공사 시행전에 계약상대자가 견본품이나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승인 후 제작 설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9.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규격품을 사용하되, 기준 규격품이 없을 시에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 및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할 수 있다. 상기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모두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0. 재료 시험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사·시험에 합격된 재료 또는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11.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공장가공을 위해 공장에 반입된 철근,철골 물량 또는 인정불가) 이하 세부내용은 계약서상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발주사무소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준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공정에 이르면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부씩 제출한다.
(단, 사진은 칼라 사진으로 하되, 스크랩을 작성하여 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각 1부씩 제출)

1) 시공 전 : 주변환경 및 대지의 현황사진을 촬영하여 착공계에 첨부.
2) 시공 중 : 주요공정을 사진 촬영하여 작업일보 제출 시 첨부.
3) 시공 후 : 준공사진을 촬영하여 준공계 제출 시 첨부.

13. 아래 내용에 대해서는 본회 검사자(공사감독자 및 농협 기술직원)의 검사를 득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도록 한다.

1) 주요공정검사
- **식생블럭 설치공사**
- **토지성토**
- **콘크리트 포장 마감**
- **아스콘 포장 마감**
-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여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검사**

※ 상기 각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즉시 수정이 불가한 부분은 수정완료 후 감독 및 감리자의 확인검사를 득한 다음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 중 필요에 의거 감독자의 재검사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관련 업무를 책임하에 수행(비용포함)하며, 어떠한 사유로도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직,간접 비용을 발주사무소에 요구하지 않는다.

14. 계약서상의 준공일(용어 정의) : 행정기관의 사용승인 필증(임시 사용승인 필증)을 첨부한 준공계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 접수받은 날로 한다.

※ 본 공사의 계약서상 준공일에 있어 사용승인서 신청 시 사용승인서에 건축주가 날인한 날이 계약서상의 준공일이 아님에 유의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5. 본 공사 수행 중에 발생하는 각종 민원, 도로점용, 착공계 제출, 중간검사, 사용승인 등의 행정기관을 상대로 하는 제반 절차는 수급자가 책임지고 처리하고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도로점용공사 착수 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전 화		휴대전화		
허 가 번 호						
도로의 종류		점 용 면 적				
공 사 실 시 방 법						
점 용 목 적						
점 용 장 소						
착수년월일	년 월 일					
준공기한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도로점용 공사착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귀하						
수수료	없 음					

※ 계약상대자는 착공전 관련 행정기관에 [도로점용공사 착수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인접건물 및 농경지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추후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 후 공사를 진행토록 하며 이로 인한 민원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보상토록 한다.

16. 본 공사 현장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안내판을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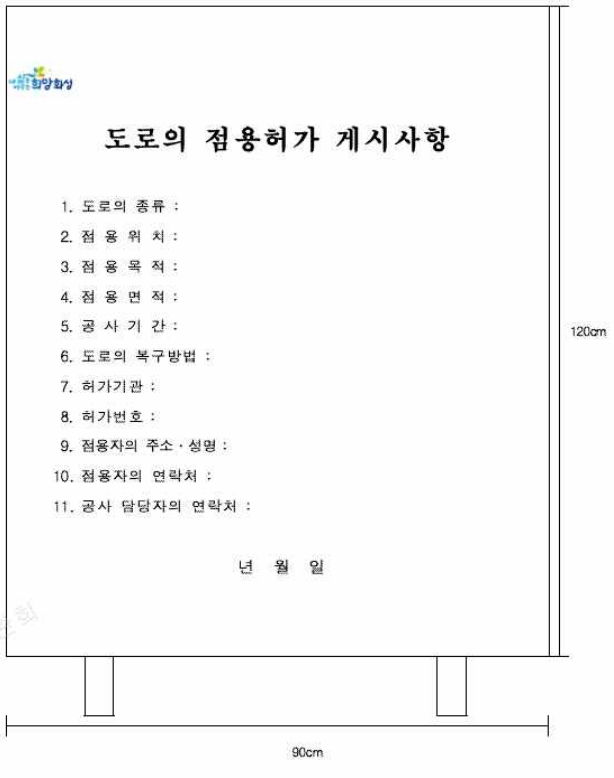

※ 높이 120cm, 길이 90cm의 안내판을 설치한다.

※ 안내판은 현장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자립형 게시판 형태로 제작한다.

17.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견실시공을 보장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며 부적당한 하도급자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하도급자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을 적용한다.

18. 안전망 또는 보호막 설치는 기존 건물 사용에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곳은 모두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9. 공사 중 현장내외를 항상 깨끗이 정리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한다.

20. 공사완료시 건물내외의 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도록 하며 시공 중 변경 또는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귀토록 한다.

21. 계약상대자는 공사완료 후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SB 1매)

22. 기타사항

가. 현장답사

1) 입찰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전에 현장답사를 통하여 현장주변여건 및 작업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입찰 참가자는 자재 수송, 노동력, 진입로 및 교통상황, 공사장에 인접한 매장 및 주변환경에** 미칠 피해 보상 위험률 등 기타사항에 있어 공사 수행 및 완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여 입찰총액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인접지역의 시설물 소유자 또는 입주자와 분규가 없도록 시공하고 인접지역에 대한 상호 분쟁 발생시와 피해 발생시는 인적, 물적 피해를 포함하여 조속히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3. 도면열람 및 배부

1) 열람 : 서화성농협 홈페이지 및 공고문 붙임서류 참조

2) 문의사항 : 신호토목 정광영 이사 (031-355-6511~2)

서화성농협 건축담당자 과장보 이완희 (031-350-8020)